

『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0월 5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 폐지이유

조례에서 정의한 ‘핵심문화시설’에 대한 정의와 개념이 불분명하고 위원회를 ‘100인’으로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시민 의견 수렴을 제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이는 시민 문화 활동가 및 일반 시민의 참여를 막을 수 있음.

위원회의 주된 기능인 자문회의를 조례로 규정할 사안은 아니며, 오히려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에 맞는 자문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보다 효율이 높을 것으로 보임. 덧붙여 본 조례가 없어도 인천

광역시와 시의회의 기능을 통해 문화 시설 설치와 보호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조례를 설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임.

본 100인 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이 계획되거나, 현재의 영역이 불분명함.

모든 문화 사안에 대해 결정이 가능한 100인 위원회로 인하여 인천광역시의 문화 시설 및 정책의 방향이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음.

본 조례를 폐지함으로서 ‘핵심시설 100인 위원회’가 또 다른 문화 권력으로 형성되는 것을 예방하고 앞으로 보다 발전된 인천광역시의 문화 예술 활동을 확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본 조례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4일(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e-mail로 인천광역시의회(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24, 팩스 032-440-8764, 이메일 xebius9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가. 현행 조례안 : 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붙임1)

나. 예반수반사항 : 해당없음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18-04-23 조례 제597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핵심문화시설 유치 및 건립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조정을 위한 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핵심문화시설”이란 문화시설의 유치와 신규 건립에 관하여 지역사회의 문화적 필요에 의해 수준 높은 문화적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문화시설을 말한다.
2.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공연·전시·문화 보급·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핵심문화시설 건립에 중요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핵심문화시설 추진과 관련한 시민·전문가의 의견 수렴·조정에 관한 사항
2. 핵심문화시설 콘텐츠 및 콘셉트 개발 조정에 관한 사항
3. 핵심문화시설 유치 및 건립에 필요한 포럼·세미나 등 개최에 관한 사항
4. 핵심문화시설 시민 홍보 및 참여 확산운동에 관한 사항

5. 핵심문화시설 개관 및 운영 시스템 조정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및 공동부위원장 각 2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부위원장은 행정부시장과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핵심문화시설 추진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시설분야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임직원 및 전문가
3.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4.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문화예술분과·미술관분과·박물관 분과·시민사회분과 등 4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분과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분과위원회: 국·공립 문화시설 유치에 관한 사항 등
2. 미술관분과위원회: 미술관 건립 및 콘텐츠 개발·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3. 박물관분과위원회: 박물관 건립 및 콘텐츠 개발·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4. 시민사회분과위원회: 시민교육·홍보 및 민간확산 운동에 관한 사항 등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 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정기회의와 분과회의) ① 정기 회의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분과회의는 연4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간사와 서기) ① 효율적인 회의운영 및 업무협조를 위하여 정기·분과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의 담당으로 한다.

제12조(회의록 작성 및 보존)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에 대하여는 참석위원 2명의 확인을 받아 보관한다.

제13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2018-04-23 조례 제5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